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36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김정재 · 김소희 · 박충권
김재섭 · 서명옥 · 김기현
박덕흠 · 조지연 · 이달희
최보운 · 주진우 · 이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자산임. 특히 철강산업은 높은 탄소 집약도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분야임과 동시에 친환경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임.

우리 철강산업은 그간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의 철강 관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게다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과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개발과 청정수소 · 무탄소 전력 등 인프

라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입주기업 및 특구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 아.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5조).
- 자.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국가 경제안보, 탄소중립,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정부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7조).

카. 정부로 하여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의 혁신발전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파.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37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의 각종 용해로에서 철광석, 재생용 고철 및 철강 부스러기 등을 용해, 압연, 제강 등 가공 처리하여 선철, 주철, 강, 합금철 등의 분, 괴, 퍼들바(puddle bar), 파일링(piling), 빌릿, 블룸, 슬래브 등 각종 1차 형태의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

나. 강괴, 형강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를 열간 또는 냉간 압연·압출·연신, 인발 및 기타 성형 처리하여 판, 봉, 선 및 반제품 형태의 기타 형강을 제조하는 산업

다. 주조, 원심 분리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각종 철강관, 튜브,

중공 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

라. 구입한 압연 강재 및 기타 철강재를 표면 처리·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특수용 철강 재료를 제조하는 산업

마. 그 밖에 철광석으로부터 주철 및 강철을 생산하거나, 그것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

2. “녹색철강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철강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그 밖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3. “녹색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녹색철강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 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자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 철강산업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및 관세 현황, 국내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6. 녹색철강특구 등 철강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녹색철강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8. 철강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9. 철강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10. 철강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11. 철강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

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
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

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녹색철강기술의 선정·변경·해제와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설비

-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비용 보조 또는 용자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관계 부처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5.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7.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8. 철강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에 관한 사항
 9. 철강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10. 녹색철강특구의 지정·조성·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녹색철강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12. 녹색철강특구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13.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층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기타 위원장이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된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된다.
-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녹색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제10조(녹색철강기술의 선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녹색철강기술을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선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녹색철강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선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철강기술의 선정·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녹색철강기술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재검토, 자료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녹색철강기술의 보조금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브릿지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색철강기술로 선정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보조·융자의 기준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녹색철강기술의 조세 감면 등)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철강특구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3조(녹색철강특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녹색철강기술 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특구 조성 및 발전 계획
4. 특구 조성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 특구 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의 공급 확대와 생산시설(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방안
6. 특구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설비 확충 방안
7. 그 밖에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특구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구 조성 계획이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여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구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특구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구 육성시책) ① 정부는 특구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구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구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특구 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특구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특구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그 밖에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구 입주기업이 철강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구 입주기업의 탄소중립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18조(보조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특구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의 설치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6. 그 밖에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특구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특구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특구에 연결되는 도로

5.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0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22조(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특구 토지의 매입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도시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녹색철강특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및 기반 조성

제25조(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가 전력망이 설치·확충되는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
와 지원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
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
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
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철강특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3. 제19조에 따른 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4. 제30조에 따른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5.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사
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 경제안보, 탄소중립,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

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철강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가 보유하는 자산의 매각 또는 운용에 따른 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철강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차입금
9. 그 밖에 이 회계에 속하는 수입

③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의 설치·확충
 2.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특구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4. 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5. 특구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6. 철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7.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설치·운영
 8.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철강산업의 기술개발사업
 10. 철강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11. 철강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12.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4. 그 밖에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5. 그 밖에 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8조(철강산업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
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
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9조(철강제품의 수요창출)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사업
3. 철강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4. 그 밖에 국내 철강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32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

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세제 및 금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혁신발전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철강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34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

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34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철강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36조(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업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업

5. 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6. 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철강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철강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

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한 지원은 특구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